

의안번호	제477호
의결 연월일	2013년 월 일 (제319회)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제안자	행정문화위원장
제안연월일	2013년 4월 18일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의안
번호

477

제안연월일 : 2013년 4월 18일

제안자 : 행정문화위원장

1. 제안 사유

- 최근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은 개발논리를 앞세워 국가적 청정지역인 충청북도 괴산과 인접한 상주시 용화 지역에 온천개발을 추진하여 충북도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온천에서 발생될 오수로 인해 인근 하류지역에 미치는 환경오염이 심각함을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음.
- 대법원에서 개발이익보다 인근 주민의 환경권을 존중하여 판결한 본질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오·폐수 처리공법의 변경으로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로 재추진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함은 물론 우리 160만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것임.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앞으로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이 백지화 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면서 이를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함.

2. 보낼 곳 : 청와대,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환경부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정홍원 국무총리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님,
윤성규 환경부 장관님 !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운영의 기조하
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심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예로부터 산수경관이 빼어난 천혜의
청정환경을 구비한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160만 충청도민
모두가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개발 지주 조합은
개발논리를 앞세워 국가적 청정지역인 우리 괴산과 인접
한 상주시 용화지역에 충청도민의 결집과 대법원 판

결로 저지되었던 온천개발을 또다시 추진하여 충북도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과 2009년 두차례에 걸쳐 대법원에서 온천 관광지 개발로부터 얻는 이익보다는 온천에서 발생될 오수로 인해 인근 하류지역에 미치는 환경오염이 더 심각하다는 사유로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 두차례나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을 판결의 본질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오·폐수 처리 공법의 변경으로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로 재추진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우리 160만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두차례에 걸친 사법부의 소송과 관련하여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환경전문가들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남한강 상류 원수

(原水)지역에 온천개발이 되면 하류지역 자정능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상수원 및 지하수의 오염으로 주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일단 환경파괴가 이루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의 환경정책에도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도민은 청정지역인 괴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산막이 옛길, 화양계곡 등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관광 휴양지로 조성하였으며 2015년 세계유기농 엑스포를 유치하여 세계인들에게 우리 청정 자연환경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장대 온천개발 예정지 인근의 신월천과 달천은 남한강 수계 상류지역으로서 환경부에서 한국의 “건강한 하천, 아름다운 하천 50선”으로 지정하여 정부에서도 인정한 1등 청정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청정환경의 자산이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난개발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60만 충청도민과함께 문
장대 온천개발 사업이 백지화 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님과 관련부처에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반대의 뜻을 간곡히 건의하오니,

부디,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을
통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건설을 위한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3년 4월 24일

충청북도의회